



2024 공유·공공저작물 및 오픈소스SW 국제 콘퍼런스

AI 시대 저작권 걱정 없는 학습데이터로서 공공저작물의 가치와 전망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





CONTENTS

01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02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03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01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공공저작물의 개념, 의의 및 활용 현황

“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예외 사유(자유이용 불가)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2013년에 신설된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국민이용 활성화 추진

01 공공저작물의 개념 |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공공저작물 보유 기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공공기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공공저작물의 예시

어문저작물

안내책자, 연구보고서, 보고서, 간행물, 보도자료, 평론, 논문 등

음악저작물

홍보음악, 기관 주제가 등

사진저작물

풍경, 인물 사진 등

도형저작물

(특수한 목적으로 창작성이 미된)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등

편집저작물

간행물, 사전, 홈페이지, 교육교재, 카탈로그, 설문지, 인명부, DB 등

연극저작물

무용, 발레, 무언극, 뮤지컬, 오페라, 마당극, 인형극, 즉흥극, 창극 등

건축저작물

건축물, 건축설계도, 건축물 모형 등

미술저작물

홍보만화, 기관 로고, 공모전 포스터, 캐리커처, 도안 등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제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는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
-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개별 허락을 받지 않고 적용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도입 배경

공공정보에 대한 민간의 수요 증가

- IT의 일상화로 시민사회 및 산업계로부터 생활·문화·지식 콘텐츠에 대한 공개요구 증가
- 뉴미디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 증가

공공저작물의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방대한 양과 품질 및 정보의 정확성을 활용한 신규서비스/산업 창출 가능성
- 공공기관은 공공정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시장과 기업은 이를 분석·가공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성 증진에 활용

0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03 공공저작물과 공공데이터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연구보고서, 사진, 동영상, DB 등의 저작물
- 공공저작물이면서 동시에 공공데이터인 자료도 존재
- 별도 신청 없이 저작권 출처만 표시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도'를 적용

공공저작물

공공데이터

-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 국민 모두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공적인 정보
-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영리적으로도 허용되지만 원본을 왜곡한 활용은 금지됨
- 목적을 벗어나거나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저작권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04 공공저작물의 활용 | 공공저작물의 개념과 의의

제공 현황

공공누리에는 총 **28,149,683**건의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상세검색 ▾

금주의 검색어

교류 아날자 캐릭터 6.25 태권도 제주 경복궁 가을 바다

보유 저작물 현황

어문 (21,587,681)

이미지 (2,199,231)

3D
(866)

영상 (203,239)

오디오
(15,929)

글꼴
(356)

참고: (2024.09 기준) 공공누리 홈페이지

활용 현황

공공저작물 활용 분야

교육
42.9%

창업
10.7%

앱/웹 등
IT관련
28.9%

- ▶ 서울명소 사진공공저작물을 활용한 VR콘텐츠 개발
-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공공저작물 이미지를 활용하여 컬러복원 콘텐츠 제작
- ▶ 지역사진 저작물과 지역 관광 정보, 지역문화 공공저작물 정보를 접목하여 AR콘텐츠 개발
- ▶ 안심 글꼴을 활용한 시니어 대상 교육 콘텐츠 제작 등

참고: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수요 분석 및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2023



02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01 디지털 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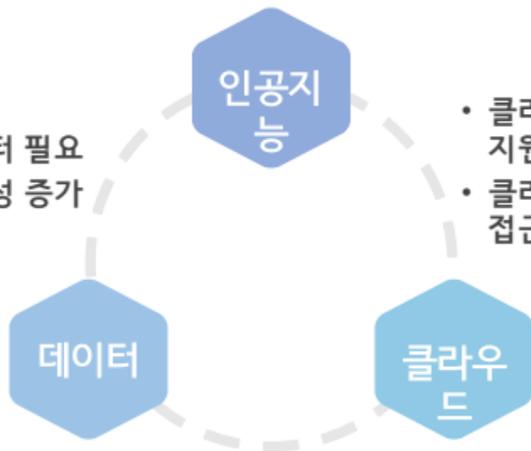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디지털적인 모든 것(All Things Digital)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
디지털 기반으로 산업,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시스템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

오늘날 디지털 전환의 핵심

- AI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더 많은 데이터 필요
→ 데이터 수집·저장·처리 중요성 증가



- 클라우드 환경은 AI 모델의 학습과 훈련 지원에 필수적 인프라 제공
- 클라우드의 확장성, 비용 효율성, 데이터 접근성은 AI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

-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적합한 환경
- 클라우드는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과 효율성 제공

02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생산 환경의 변화 |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 콘텐츠 산업 내 융합 및 타 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
- 오프라인 기반의 콘텐츠 산업이 온라인 서비스와 결합해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오프라인의 경험을 구현
- 디지털 콘텐츠의 패러다임과 이용형태의 혁신적인 변화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의 등장으로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 간의 융합이 활성화
: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 생성되는 기반이 되고,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가 용이해지는 변화

03 디지털 기술과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저작물

창작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한 적합한 형태의 보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화재산과 지식재산을 재창조하는 데 기여



Copyleft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자



Copyright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난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진정한 문화와 지식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03 디지털 기술과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저작권 제도의 목표

-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저작권 사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과 합리적인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함
- 이로써 기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제공

-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변화와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고려하여, 저작권 제도는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보장하고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
- 이를 통해 사용자와 저작권 소유자 간의 이익 균형을 유지

디지털 기술과 이익균형

공공이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지식과 창작물의 발전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저작물 창작의 의존성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간 균형을 유지할 필요

04 오늘날 저작권 이용 및 보호 제도

디지털 전환과 경계형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와 대응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제도

- 법정허락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교육 목적 등)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종량방식	포괄방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 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학생 1인당 연간 기준 금액은 다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 1,300원 ○ 전문대 1,200원 ○ 원격대 1,100원 	수강생 1인의 시간당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수업) 12원/인·시간 ○ (원격수업) 32원/인·시간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공정이용 제도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법에서 사전에 정한 경우 외에도,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려 사항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이용 제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미국의 경우에도 공정이용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하지 않고 포괄 조항으로 두고 있어 적용 범위가 넓은

국제협정/국제기구를 통한 제도 마련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 WTO가 본 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
- 국경을 초월한 컨텐츠 유통에 따른 저작권 보호 등 새로운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 WIPO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 전문기구로, 1970년 설립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3개국 이 가입
-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등 총 23개의 조약을 관장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저작권 분야 국제 분쟁 조정제도의 활용을 제고하고자 **공동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



03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활용과 저작권 분쟁 사례

0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인간의 지적 능력>



시각지능



언어지능



판단지능



공간지능



요약/창작



분류

...

컴퓨터로 구현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정답을 추론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학습하는 기술

딥러닝 (Deep Learning)

인간의 뉴런과 유사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학습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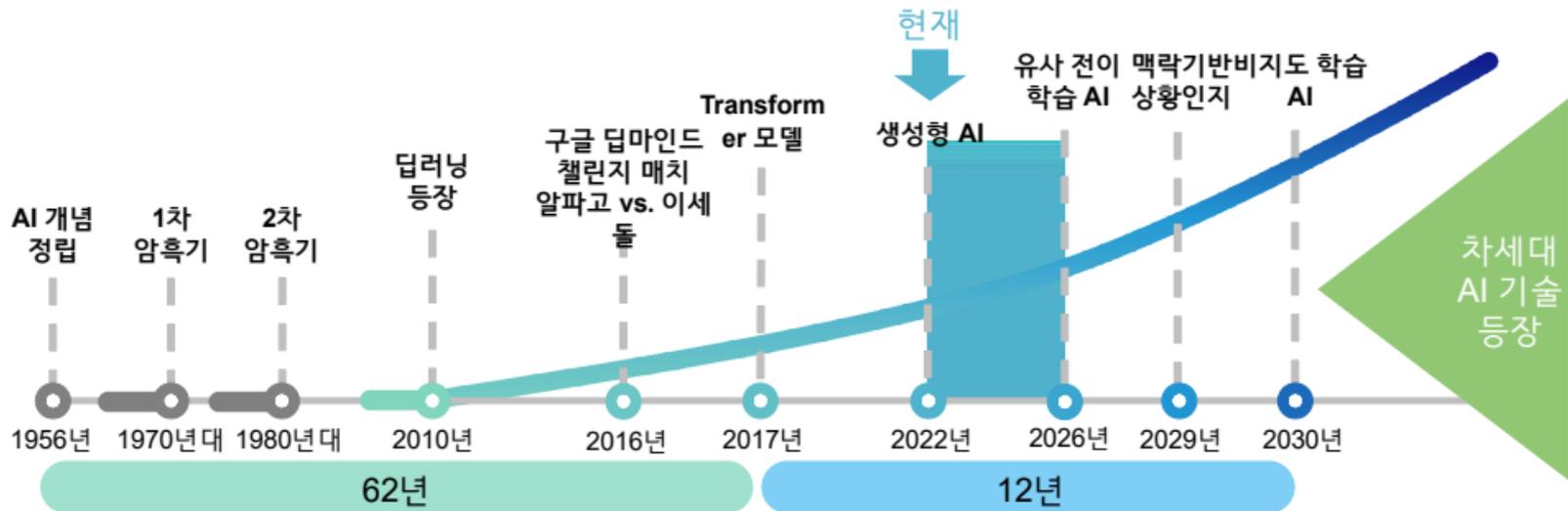
생성형 AI (Generative AI)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결과를 생성하는 기술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기술적인 구현 방법론에 따라 세부 분류할 수 있음

01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딥러닝 기술
한계 극복언어·시각·청각
지능 활용생성형 인공지능
확산복합지능형 인공지능
등장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현재는 생성형 AI가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으며, 2030년대에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인공지능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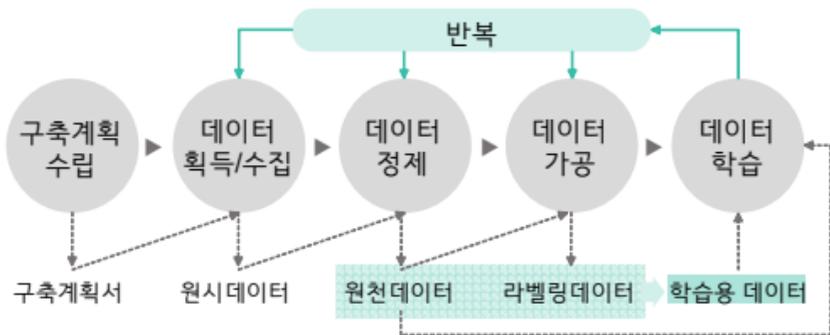
02 인공지능의 발달과 학습데이터의 중요성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학습데이터의 특징과 중요성

- 학습데이터는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에 사용하는 원천데이터와 라벨링데이터의 묶음을 의미
-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인공지능 생태계의 경쟁력이자 필수 동력이 되는 양질의 학습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과정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2022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2022.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사업 공고문

2023.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2024년도 초거대AI 확산 생태계 조성 사업(1차) 공고문

2024.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대규모 학습용 데이터 수집·공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9년부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을 추진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공지능의 도입에 진입장벽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학습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목표 사업비 약 2조6천억원의 투입을 예상하고 있음

03 AI 시대의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확보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

- AI의 학습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이를 인공 신경망에 전달하여 학습시키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에 대한 복제 등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
-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하거나, 생성형 AI의 학습을 위해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등 무단으로 이용하여 법적 소송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 같은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대한민국,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12월,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공개
- (목적)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촉발된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관련자에게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 학습데이터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AI 사업자는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명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목적)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운용되는 유럽 단일시장의 구축 및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개발
- LLM 운영 기업이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저작권 확보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의무 조항 포함

04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분쟁 사례 (1/2)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국내



국립국어원



1,188개 출판사



국립국어원 '우리말 말뭉치 서비스' - 웅진북센 vs 출판사

- 2022년, 국립국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인 '우리말 빅데이터(말뭉치)'가 저작권 문제로 일부 중단된 사례
- 해당 서비스의 문어 부문 데이터 구축을 입찰 진행한 웅진북센이 2010년 인수한 자회사 북토피아가 웅진북센에 인수되기 전, 출판사들을 통해 수집한 콘텐츠 약 1만 6,000종을 출판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 → 추후 저작권 사용료 정산
- 출판인회의는 본 사건을 계기로 향후 AI 서비스와 관련해 출판 콘텐츠를 제공할 때는 사용 목적이나 분량, 범위, 기간 등을 분명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

해외

The New York Times



OpenAI



Microsoft

뉴욕타임즈 vs Open AI, Microsoft

- 2023년, 뉴욕타임즈가 Open AI와 Microsoft를 상대로 GPT 기반 서비스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대량으로 복제하여 학습함으로써 만들어졌으며, 생성형 AI의 산출물이 학습에 사용된 기사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력한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
- 학습된 데이터를 생성형 AI가 거의 그대로 출력함으로써 복제권 침해 이슈가 발생, 오픈AI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인터넷 자료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소송 진행 중)

04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분쟁 사례 (2/2)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해외

gettyimages

stability.ai

Getty Images vs Stability AI

- 오픈 소스 기반 이미지 생성 AI Diffusion 모델인 Stable Diffusion을 제작한 Stability AI는 Getty Images 웹사이트를 크롤링하여 얻은 이미지 및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Getty Images는 Stability AI가 약 20억 장의 이미지를 AI 모델 학습에 투입했고 최소 수천 장의 이미지를 라이선스 구매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영국과 미국에서 Stability AI를 상대로 소송 제기(소송 진행 중)

해외



소설가 3인



엔비디아 vs 소설가

- 2024년, 브라이언 킨압디 나제미안/스튜어트 오년 등의 소설가 3인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 플랫폼 '네모'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소설을 무단 도용했음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례
- '네모'는 개발자가 LLM과 생성형 AI를 간편하게 구축하고 학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학습데이터로 19만 권의 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엔비디아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소설가 3인의 소설을 학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하였음

05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분쟁의 쟁점

AI 시대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분쟁 이슈와 논의

불분명한 데이터 출처와 무단 사용

- 학습을 위한 대규모 데이터셋의 마련을 위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미지, 텍스트, 음악 등 다양한 저작물을 학습하여 생성된 결과물이 원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짐

AI 사업자

학습데이터 확보 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및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저작권자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반대 의사 명시 또는 기술적 조치 필요

AI 이용자

생성형 AI 이용 시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데이터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

- 현행 「저작권법」은 AI 학습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개별적인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 여부에 주목
→ 학습데이터 활용이 공정이용인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고려 사항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책임 소재

-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 특히,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로부터 확률적으로 답변이 생성되는 구조

- AI가 생성한 산출물이 학습용 데이터에 포함된 원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이는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인가?
-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누구인가?
(AI 사업자인가? AI 이용자인가?)

경계가 더욱 허물어지는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화하는 AI 시대 속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공동 재산인 공공저작물의 활용도를 높여 창작을 고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문화재산과 지식재산을 재창조해야 할 것



THANK YOU

